

제 3 장 음성권 침해 사례

❶ 사 례 27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보도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인 신청인의 음성이 동의 없이 녹음·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 |
|-------|-------------------------------------|
| 사 건 | 2014서울조정268, 2014서울조정269(병합) 각 손배청구 |
| 신 청 인 | 표○○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KBS 미디어) |
|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
| 접 수 일 | 2014. 03. 25.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여성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함께 고발당한 의사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방문해 신청인에게 원장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녹음한 후 음성변조없이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보도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병원 모습을 내보내고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은 물론, 신청인의 목소리를 음성변조없이 보도해 고객 응대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및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음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22일자, KBS미디어 3월 22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 ▷ 리포터 : 원장님 혹시 지금 진료예약 아직 가능한가요?
- ▷ 표○○코디 : 따로 드릴 말씀드릴게 없구요. 안계시니까 나가주세요.
- ▷ 리포터 : 일체 어떤 말씀도 해주실 수 없나요?
- ▷ 표○○코디 : 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각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21일(월)까지 총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KBS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의 음성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 사 례 28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 |
|-------|---------------------|
| 사 건 | 2014서울조정717 손해청구 |
|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
|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
| 접 수 일 | 2014. 05. 23.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이 생전에 벌였던 다양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증언을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음성변조 후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음에도, 음성 변조 없이 보도돼 구원파 신도인 남편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음성권 침해에 따른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세 번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인터뷰가 음성변조 없이 보도된 과실을 인정하고 다시보기 영상을 즉각 삭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하자 중재부는 음성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현장 21 프로그램 『유병언 일가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3일자)

■ 내 용

▷ 진행자 :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배를 버렸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되어 가지만 구조된 생존자는 사고발생당일 174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멈춘 생존자 숫자처럼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2012년 10월 18년된 노후 선박을 일본에서 116억원에 사왔습니다. 이후 30억원을 들여 배를 개보수했습니다. 146억 가운데 100억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국내 최대 규모의 호화 여객선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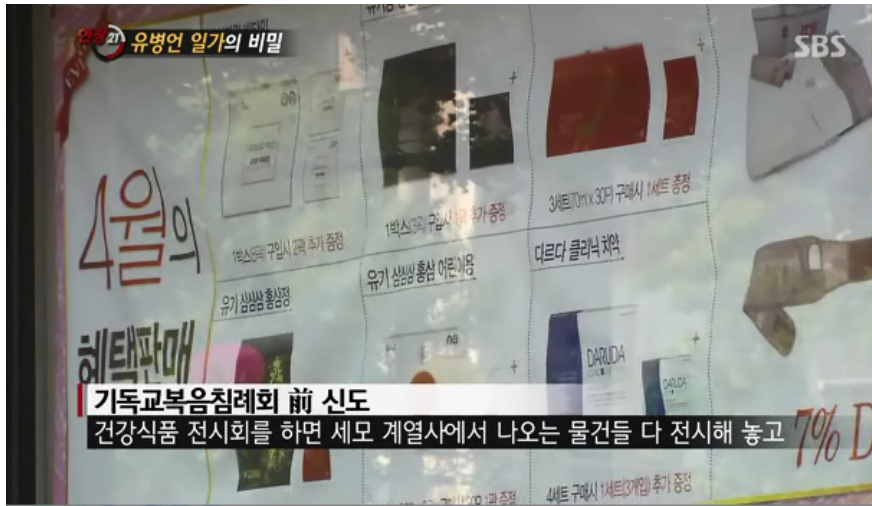
그런데 현장 21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사고직전 세월호를 해외에 팔기위해 선박매매 시장에 내놔던 겁니다.

<중략>



▷ ○○○(음성변조) : 대부분 신탁에 회원들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자본금은 우리 신도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신탁들이죠. <중략>

- ▷ 진행자 : 회사는 신앙심을 빌미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은데다, 생산된 제품의 영업에도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 ▷ ○○○(음성변조) : 건강식품 전시회를 하면 세모 계열사에서 나오는 물건들 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거예요. 며칠씩 한 일주일씩. 그때 이제 우리 모임 식구들한테 ‘야 너 누구를 얼마나 데리고 와서 얼마까지 팔래?’ 그리고 스쿠알렌을 몇 계좌씩 작성(현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나머진 팔아서 현금으로 갖다 내야 돼 교회에 못 팔면 내가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 금액을 메워야해요.

(중략)

- ▷ 진행자 : 세월호의 증축된 부분이 유 전 회장의 사진갤러리로 꾸미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유 전 회장은 억만장자라 불리던 사진작가 아해와 동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한 이력을 내세우며 세계적인 작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미술평론가 : 루브르에서에서 한국인이 전시를 한다는 건 이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게됐는데 루브르 본관 자체도 아니고, 텔르리 파크라는 그 앞에 있는 공원 거기다가 어떤 가설치물을 만들어서 전시했다고 하더라구요.
- ▷ 진행자 : 이때도 교회 신도들은 단체로 관람을 갔다고 합니다.



▷ ○○○ : 요즘은 유병언씨가 사직작가로 탈바꿈해서 사진 엄청나게 찍어대고 전시하고 나서 그 전시회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 패키지여행으로 해가지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2014.4.29.자 「유병언 일가의 비밀」 제하의 방송)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014. 06. 2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4,000,000원 지급